

의안번호	제2886호
의 결	. . .
연 월 일	(제 회)

의결사항	
------	--

## 고성군 기념물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

발 의 자	허옥희 의원 등 8인
발의연월일	2024. 12. 27.

# 고성군 기념물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(허욱희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886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4. 12. 27.

발 의 자 : 허욱희, 정영환, 김원순,  
김석한, 김향숙, 이쌍자,  
최두임, 우정욱 의원(8인)

## 1. 제안이유

지역사회 발전 및 향토의 명예를 빛낸 인물이나 단체를 찾아내 숭고한 뜻을 기리고 고성군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공적비, 기념비, 동상 등 기념물의 건립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 및 제2조)
- 나. 건립대상 및 선정기준(안 제4조)
- 다. 건립승인 및 사실확인(안 제5조)
- 라.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(안 제7조 및 제8조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
- 나. 입법예고: 고성군의회 공고 제2024-56호
  - 예고기간: 2024. 12. 27.(금) ~ 2025. 1. 2.(목)[6일간]

- 의견반영 등 조치 내용: 의견없음

#### 4. 본문: 붙임과 같음

## 고성군 기념물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발전 및 향토의 명예를 빛낸 인물이나 단체를 찾아내 숭고한 뜻을 기리고 고성군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공적비, 기념비, 동상 등 기념물의 건립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“기념물”이란 고성군에서 일어난 뜻깊은 일, 훌륭한 인물 등에 대하여 보이는 것과 알려져 있는 사실들을 기념하기 위하여 형상화한 것을 말한다.

**제3조(적용범위)** ① 고성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가 공공용지에 기념물 건립 승인을 하거나 직접 건립하는 경우 및 동상 등의 관리에 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② 단순한 예술 창작활동에 따른 전시 등의 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공조형물을 건립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

**제4조(건립대상 및 선정기준)** ① 기념물의 건립대상은 역사적 자료나 고증 등에 따라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인물 또는 사실에 한정하며, 선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대한 공헌도

2. 역사·사회·문화·예술·과학기술 등의 진흥 및 발전에 대한 기여도
3. 대상 인물이나 사실에 대한 국민 공감도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념물 건립은 고성군에서 출생하였거나 거주·활동하였던 사람 또는 고성군에서 일어난 사실이어야 한다.

**제5조(건립승인 및 사실확인)** ① 기념물을 건립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건립승인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7조에 따라 기념물을 고성군에 기부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.

1. 기념물 건립 신청서: 별지 제1호서식
2. 건립계획서: 별지 제2호서식
3. 기부채납서: 별지 제3호서식
4. 사실조사 확인서: 별지 제4호서식

② 제1항에 따른 기부채납은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 제5조에 따른다.

**제6조(관리)** 군수는 기념물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해당 기념물 소재 재산관리관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할 수 있다.

1. 기념물 관리대장의 작성 및 비치(별지 제5호서식)
2. 기념물 등의 주변 환경 정비
3. 훼손된 경우 보수를 위한 조치
4. 보수에 장기간이 걸리는 경우 안내판 설치 등 그 밖의 사항

**제7조(위원회의 설치)**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자문하기 위하여

고성군 기념물 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1. 기념물 건립의 적격 여부
2. 기념물의 명칭 결정
3. 기념물 건립 장소, 기념물의 이설 또는 철거
4. 그 밖에 군수가 기념물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**제8조(위원회의 구성)**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,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.

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1. 고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 1명
2. 업무 담당 국장
3. 업무관련 부서장
4. 그 밖에 기념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⑤ 위원회는 건립대상의 성격에 따라 구성하고 안건의 심의가 종료되면 위원회는 해산된다.

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, 간사는 위원회 주관부서의 담당이 된다.

**제9조(위원회의 회의)**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

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관 계 법 령(발췌)

### 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

제7조(기부채납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려는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을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기부하려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아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. <개정 2021. 4. 20.>

1. 행정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을 기부자, 그 상속인,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
2.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는 경우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, 그 상속인,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할 것을 조건으로 그 대체시설을 기부하는 경우

[전문개정 2015. 1. 20.]

### 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

제5조(기부채납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기부(寄附)를 받아들일 때에는 기부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하게 적은 기부서와

권리 확보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재산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토지등기사항증명서, 건축물대장, 토지대장, 임야대장, 지적도나 임야도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 7. 7.>

1. 기부할 물건의 표시
2. 기부자의 명칭, 성명(법인의 경우는 그 대표자의 성명) 및 주소
3. 기부의 목적
4. 기부할 물건의 가격
5. 기부할 물건의 도면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표자가 기부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각 기부자의 성명·주소 및 기부 재산 등을 적은 명세서를 제1항의 기부서에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.

③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법 제2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·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기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전대차(轉貸借)사업계획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 <개정 2018. 1. 9., 2022. 4. 20.>

1. 전대(轉貸)하려는 재산의 표시
2. 전대하려는 재산의 사용·수익의 목적, 방법 및 기간
3. 해당 재산을 전대받아 사용·수익하려는 자의 성명 및 주소

④ 법 제7조제2항 본문에서 “기부하려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

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하는 것인 경우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 <개정 2022. 4. 20.>

1. 무상 사용허가기간이 지난 후에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

2. 재산 가액(價額) 대비 유지·보수비용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

3. 삭제 <2022. 4. 20.>

4. 그 밖에 지방재정에 이익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
⑤ 기부를 조건으로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허가를 하기 전에 기부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각서를 받아야 한다. <신설 2014. 7. 7., 2022. 4. 20.>



(별지 제2호서식)

## 건 립 계 획 서

1. 사 업 명:

2. 사업 목적:

3. 사업개요

가. 설치위치:

나. 규 모:

다. 모형 또는 형태:

라. 재 질:

4. 사 업 비:

5. 사업비 조달계획:

(별지 제3호서식)

## 기부채납서

### 1. 기부할 물건의 표시

- 유형: 공적비, 기념비, 동상, 조형물
- 모형 또는 형태:
- 규모:
- 재질:
- 기부채납 희망위치:

### 2. 기부자

- 성명(법인대표자):
- 주소:

### 3. 기부목적

### 4. 기부할 물건의 가격

### 5. 기부할 물건의 도면 등

(별지 제4호서식)

# 사실조사 확인서

## 1. 인적사항

성 명	(한자)		
생년월일	년 월 일	대외직명 (직위·직급)	
주 소	※ 도로명 주소 기재		

## 2. 사실조사 확인내용

- 공적사항(공적내용과 일치여부)
  - ※ 역사적 자료나 고증 등 객관적 평가 확인 포함
- 지역 및 사회적 여론·평가(공사생활 등)
- 지방세 체납확인

년 월 일

(조사자)

소 속 :

직 위 :

성 명 :

(인/서명)

(별지 제5호서식)

(앞쪽)

기념물 관리대장			
명 칭		건립일자	
위 치 (공공시설명)		형 상	
구 조			
규 격			
건립주체		관리기관	
건립취지			
인물 또는 사실 소개			

(뒤쪽)

위치(배치)도

전면사진 (5" ×7" )